##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33

발의연월일: 2021. 3. 8.

발 의 자:서영교·김영배·박상혁

박 정・박홍근・신정훈

양정숙 • 오영환 • 오영훈

임오경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에 대한 학대·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.

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분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경찰관의 관련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.

이에 경찰관이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·신체·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,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,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##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4(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) 경찰관이 아동·청소년·노인 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·신체·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1조의4(경찰 직무활동에 대한
	면책) 경찰관이 아동ㆍ청소년
	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
	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
	•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
	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
	게 생명・신체・재산상의 피해
	가 발생한 경우, 그 직무 수행
	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
	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
	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
	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
	거나 면제할 수 있다.